

여성가족부, 아이돌봄서비스 종합개선 대책 마련

육아정책연구소 성과공유팀

지난 3월 아이돌보미 아동학대 사건 발생 이후 여성가족부는 채용·교육, 부모참여, 영상정보처리기기, 처벌, 전담기관 지정, 아이돌보미 종사자 근로여건 개선 등 다양한 영역에서 아이돌보미 아동학대 처벌 뿐만 아니라 사전예방을 위한 아이돌봄서비스 종합개선 대책을 마련하여 지난 4월 26일(금) 발표하였다. 본 대책은 다양한 관련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나온 수요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아이돌보미 선발부터 교육, 모니터링 및 근본적인 시스템 강화 등을 아우르고 있다. 이번 대책을 통해 보다 안전한 아이돌봄서비스 이용과 이를 위한 현장 기관, 지자체, 종사자, 이용자 간의 지속적인 협력을 기대해 본다.

지난 3월 아이돌보미 아동학대 사건 발생 후, 여성가족부(장관 진선미)는 4차례의 장관 현장 방문 및 간담회 및 3차례의 「아이돌봄서비스 제도개선 TF(전담조직) 회의」 개최를 통해 현장 및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여 지난 4월 26일(금) 관계부처 합동으로 「안전한 아이돌봄서비스를 위한 개선대책」을 발표했다.

본 대책은 특히 현장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공통적인 수요로 나타난 인·적성 검사 시행, 교육 및 처벌 강화 등을 강조하였으며, 사후 아동학대 행위자에 대한 처벌에서 더 나아가, 사전 채용 절차부터 교육의 질 제고 및 아이돌보미 종사자들의 근로조건 개선 등의 예방책에 중점을 두었다. 본 대책에서 제시한 주

요 추진과제는 아래 <표 1>과 같다.

1. 아이돌보미 선발 및 교육

선발 과정부터 보다 철저히 아이돌보미의 인성과 자질을 검증하기 위해, 인·적성 검사를 도입할 예정이다. 5월부터는 유사한 검사도구를 활용하고, 2020년에는 아이돌보미를 위한 인·적성 검사 도구를 별도 개발한다. 면접을 위해서는 아이돌보미 역량 검증을 위한 표준 면접 매뉴얼을 개발하고, 면접 시 아동학대 예방 또는 심리 관련 전문가가 들어가도록 한다.

* 본고는 여성가족부 보도자료 “아이돌보미 선발부터 서비스 품질관리까지 아이돌봄서비스 종합개선”(여성가족부, 2019. 4. 25.) 및 “아이돌보미와 이용 가정간 소통 행사 열린다”(여성가족부, 2019. 5. 9.)를 요약하여 작성함.

〈표 1〉 안전한 아이돌봄서비스를 위한 개선대책 주요 추진과제

1. 아동학대 예방 강화	채용·교육	- 인·적성 검사 도입 - 사례 중심 교육 및 현장실습 확대(10시간→20시간)
	부모참여 돌봄	- 아이돌보미 '통합관리시스템' 구축으로 근태 및 활동 이력 공개 - 부모에 의한 '실시간 아이돌보미 만족도 조사' 실시
	영상정보처리기기	- 아이돌보미 채용 과정에서 설치에 대한 충분한 안내 및 사전 동의 확인 - 동의하는 아이돌보미를 영아 서비스에 우선 파견
	처벌	- 학대 의심사안 발생시 즉각 활동 정지 - 자격 정지 강화(6개월→2년) - 보호처분·기소유예 시에도 5년 간 활동 배제
2. 공공관리체계 강화	전담기관 지정	- 중앙단위 서비스 품질 균질화를 위한 총괄 지원기관 지정 추진
	근로여건 개선	- 아이돌보미 및 서비스 제공기관 종사자 치유 지원 등 스트레스 관리 - 자격제도 도입검토 등 자격관리 강화 및 서비스 내실화

아이돌보미 양성 및 보수체계도 아동학대 예방을 위해 개편될 예정인데, 내용으로는 아동학대 발생 시 처리 절차, 대처 요령 등을 포함한 아동학대 관련 교육을 강화함과 동시에 구체적인 사례 제시에 주력한다. 아동학대 교육의 시간 역시 양성교육에서는 2시간에서 4시간으로, 보수교육은 1시간에서 2시간으로 늘어날 뿐만 아니라, 현장 실습 또한 10시간에서 20시간으로 확대된다.

2. 모니터링 및 신고

서비스 이용자와 현장의 의견을 바탕으로 올해 안에 아이돌보미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 아이돌보미의 출퇴근 현황, 주요 활동 내용 및 이력 등을 관리한다. 올해 안에 어플리케이션도 개발하여, 이용 부모가 서비스 이용 후기 및 해당 아이돌보미 평가를 작성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부모가 사전 모니터링을 신청하는 경우, 우선적으로 방문 모니터링을 실시하며, 점검 항목에는 아동학대 예방 항목이 추가된다. 영상정

보처리기기 관련해서는, 채용 시 관련 안내 및 설치에 대해 사전 동의한 아이돌보미가 영아 서비스에 우선적으로 배치될 예정이다.

또한 여성가족부는 아이돌보미 아동학대 근절을 위해 지난 4월 8일(월)부터 6월 30일(일)까지를 특별신고 기간으로 지정하여 「아동학대 실태점검 특별신고 창구」를 개설 및 운영한다. 7월부터는 '실태점검 특별신고' 창구가 아이돌봄서비스 불편사항 접수 창구로 바뀌어 서비스 개선에 관해 의견을 접수할 예정이다.

아동학대 의심 행위로 판단되는 아이돌보미 종사자에 대해서는 즉시 시행되는 활동정지 기간이 6개월에서 자격정지 여부 결정시까지로 늘어나고, 아동학대 판정 시 자격정지 기간 역시 현행 6개월에서 2년으로 강화된다. 자격취소는 현재 규정(벌금형 이상 10년, 실형 20년 결격)에 보호처분 및 기소유예 시 자격 취소가 추가되어, 확정 이후 5년간은 아이돌보미 활동이 불가하도록 한다. 즉, 자격정지 기간은 보육교사와 동일한 수준으로 강화하되, 자격취소 및 활동배제 기준은 보육교사보다 엄격하게 적용한다.

여성가족부는 금년 내 「아이돌봄지원법」 개정 등을 통해 이를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3. 공공관리체계 개선

공공관리체계 강화를 위해 중장기적 아이돌봄서비스 전담기관의 지정을 검토하고 있으며, 여성가족부-지원기관-서비스 수행기관 간의 역할을 체계적으로 분담하도록 노력할 것이다. 또한 효과적인 인력 관리를 위해 직무분석을 통해 적정 인력을 판정하고, 행정업무 간소화를 위해 서비스 변경 및 취소 신청, 퇴사 처리 등을 전자화한다.

아이돌봄미의 처우 개선을 위해서도 향후 지속적으로 검토해 나갈 예정이며, 이들의 심리적 고충 완화를 위해 지역 상담기관과 협력하여 상담,

심리, 치유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등 심리적 지원도 제공한다. 또한 2020년부터는 우수 활동 아이돌보미를 선정 및 포상하여 이들을 독려할 계획이다. 이들 아이돌보미 종사자들의 안전 및 인권을 위한 요소, 안전관리 점검표를 포함한 안전관리 매뉴얼도 제작 및 배포한다. 여성가족부는 아이돌보미 종사자와 서비스 이용자 간의 소통 및 신뢰 회복을 위해 지난 5월 11일(토) “아이돌봄 한가족 나들이” 행사를 진행하여 서로를 격려하고 유대감을 형성에 기여하고자 하였으며, 이후에는 상호 준수할 ‘수칙’을 마련하여 배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